

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[별표 2] <신설 2021. 11. 30.>

시·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징계등 사건의 관할(제1조의4제3항 관련)

위원회	징계등 사건의 관할
1. 제1위원회	<p>가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 5급이상공무원등에 대한 징계등 사건</p> <p>나. 시·도지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. 다만, 시·도지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.</p> <p>다. 제2위원회 관할 사건으로서 제2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·도지사가 제1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징계등 사건</p> <p>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</p>
2. 제2위원회	<p>가. 시·도지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. 다만, 시·도지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.</p> <p>나. 위원회를 둔 시·도지사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</p> <p>다.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.</p> <p>라.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. 다만 별표 1 제3호라목의 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.</p> <p>마. 위원회를 둔 시·도지사 소속 기관의 장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가 관할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·도지사 소속 위원회에 심의·의결을 요구하는 징계등 사건</p> <p>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정한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</p>

비고

1. 제1호가목 중 “시·도지사”와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.

2. “5급이상공무원등”이란 5급 이상 공무원(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), 지방전문경력관 가군, 연구관 및 지도관,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.